

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1. 3. 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18호로 2021년 2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』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,
-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(2020.10.16.)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(규약 제3조)

- 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명 거주 외에 총인구대비
외국인주민 비율이 3%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

나. 임원 확대 구성(규약 제5조)

- 회장,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

다.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(규약 제12조)

-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(안전)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
회의 참석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~ 제15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- 협의회 회원의 자격 요건 추가(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3%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)
- 임원의 구성 확대(부회장 2인으로 확대)
-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(회원도시가 아니라도 안건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가능)

○ 규약 개정안은 회원 자격요건, 임원 등을 확대하여 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따라서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

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